

제5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12.17(수)13:30~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2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2월 16일

3. 제안 이유

- 충북도의 대표적 기업지원기관으로의 사업확대와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기관 명칭변경
- 법인 명칭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(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
→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)

나. 법인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3조)

(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→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)

다. 사업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3조)

(사업 위탁기관 : 지경부장관, 중기청장, 충청북도지사

→ 정부, 지자체,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)

라. 약칭 변경 : 지원센터 → 진흥원(안 제3조부터 제8조)

마. 기관장 명칭변경 : 본부장 → 원장(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충북의 대표적 기업지원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위탁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, 주무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- 다만,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2015년 1월 1일부터 기관과 기관장의 명칭이 변경되는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